

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위한 핵심 공간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,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의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차 전용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,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·

시행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,
- 시장의 책무 및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·시행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,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